

## 2026년 상반기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 사업 공고

「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1월 12일  
과 천 시 장

1

### 지 원 개 요

가. 공고기간 : 2026. 1. 12.(월) ~ 1. 30.(금)

나. 신청기간 : 2026. 1. 26.(월) ~ 1. 30.(금)

#### 다. 신청대상

- 과천시에 과천시민 우선채용을 신청한 날의 전월부터 과거 1년 동안( '25년 1 ~ 12월)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을 초과한 관내 중소기업,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

※ 신규신청기업은 신청 시 ‘협약신청서’ 작성 제출

※ 사치성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제외(붙임 참조)

※ 2026년 과천시 생활임금(12,090원) 이상 임금 지급기업 우대

라. 지원인원 : 00명 / 기업당 3명 이하

마. 지원내용 : 고용보조금 및 교육보조금

- 고용보조금 : 월 최저임금 50% (1,078,440원) 이하

- 교육보조금 : 월 최저임금 60% (1,294,120원) 이하, 1회

※ 2026년 최저임금 : 월 2,156,880원(주 40시간 근무, 월 209시간 기준)

※ 예산 범위 내, 신청 기업 수에 따라 지원액 조정(형평성 유지)

## 바. 지원대상 요건

- (다)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과천시민을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
- \* 신규채용 인정 기간 : 2025. 7. 1.부터 공고일 현재
- 입사일 이전에 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경과한 만 20세 이상인 사람
- ※ 신규채용이란, 해당 기업에 **최초로 채용**된 경우를 말하며, 재채용된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.
- ※ 입사기업의 대표자 및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- ※ 다른 고용지원사업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

## 사. 고용유지 및 지원기간 기준

-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후 2년 이상 고용보장하여야 함
- 근로계약 성립 여부는 4대 보험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
- **채용한 날부터 3년 이내로 지원(최초 2년 지원 후 재심사 통과 시 1년 연장) 가능함**
- \* 재심사요건 : 최초 지원받을 당시의 상시 고용인원을 초과하여 고용 유지해야함
- 상시 고용인원 산출 시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 본인,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
-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시,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보조금 지급
- **지원 도중 상시 고용인원이 3명 이하가 될 경우, 인원 충원을 위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에도 기준 미달 시 지원 중지**

## 아. 신청방법

- 신청방법 : [붙임2] 작성 후 이메일([forest36@korea.kr](mailto:forest36@korea.kr)) 신청  
※ 이메일 발송 후 담당자와 수신 여부 확인 필수
- 문의처 :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(☎ 02-2150-3693)

- 총사업비는 기본급을 근거로 산정하며, 자부담 비율이 50% 이상이어야 함 (식대 등 기타 수당은 사업비에서 제외)
- 기존 지원 대상자 역시 계속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, 지원 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함.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임
- 보조금 신청서 서류검토 시 외 연중 1회 이상 기업방문 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
- 지원 대상자가 자진퇴사할 경우, 채용기업은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참여포기 확인서와 지원 대상자의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함. 보조금은 퇴사전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함.
- 교육보조금은 채용자 1명당 1회까지 지원가능함. 교육훈련은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·지정직업 훈련시설,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, 그 외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함. 기존 지원 대상자가 교육보조금을 이미 신청하였으나 실제로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, 재신청 가능함. 단, 소급 지원은 불가함
-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은 「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판단함
- 공고문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 또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「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「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 관련법령을 따름

## 「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

### 제12조(교부결정의 취소 등)

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
2.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
3.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
4. 시민이 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
5.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을 휴·폐업 또는 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
6.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이 발견된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.

③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보조금을 지원받은 채용자를 2년 이내에 해고할 때에는 시장은 해당 채용자의 고용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 보다 감소 되었을 때에는 교부한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추가 교부는 중단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의 귀책사유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.

**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에 따른 보조금 환수대상 기업은 2년간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**

3

지 원 절 차



**붙임**

**지원 제외 업종**

업종	분류코드	해당업종
축산업	01299中	개식용 사육업
제조업	10111中	개식용 도축업
	33402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中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	46102中	주류, 담배 중개업
도매 및 소매업	46107中	골동품, 귀금속 중개업
	46205中	개식용 도매업
	46209中	잎담배 도매업
	46313中	개고기 도매업
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
	46416,7中	모피제품 도매업(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)
	46463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	47212中	개고기 소매업
	47640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	47859中	성인용품 판매점
	47911,2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도소매업
음식점업	561中	개고기 음식점
주점업	56211,2	일반(무도)유흥 주점업
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	58122中	경마, 경륜,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
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5821中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	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	63999中	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, 게임아바타중개업
금융 및 보험업	64~66	금융 및 보험업 (단, 손해사정업(66201), 보험대리 및 중개업(66202)은 제외)
부동산업	68	부동산업 - 부동산 임대·구매·판매 관련 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·임대를 포함 - 단, 부동산 관리업(6821)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부동산 중개, 자문 및 감정 평가업(6822)은 신청가능 * 부동산 관리업 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을 유지·관리하는 산업활동 * 중개, 자문 및 감정 평가업 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 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- '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'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(소비자)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,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,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(서비스)을 제공하는 경우 신청가능
전문서비스업	711~2	법무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
	7151	회사본부
수익업	731	수익업
사업지원 서비스업	75330中	흥신소
	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	75999中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	76390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교육서비스업	851~854	초·중·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
보건업	86	보건업
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	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	91121	골프장 운영업
	9122中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	9124	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	91291	무도장 운영업

협회및단체	94	협회 및 단체 (단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)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12中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
	96992	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
	96999中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	97~98	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
국제 및 외국기관	99	국제 및 외국기관